제 8 장 무역구제제도

조사총괄과 김현대 서기관, 김윤관 주무관

제 1 절 개 요

2003년도는 산업피해구제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무역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해로 평가된다.

무역구제의 법적 근거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무역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에 대한 한시적인 세이프가드조치 및 향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한 세이프가드조치의 근거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산업피해구제와 관련하여는 반덤핑 15건을 새로이 접수하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15건을 포함 총 30건의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공정무역행위는 전년도 이월 3건과 신규신청된 4건을 합쳐 모두 7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역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을 활발히 하여 “미국, EU 및 캐나다의 반덤핑조사 사례분석” 등 용역을 실시하였고, “안경테 산업” 등 수입영향력이 큰 5개 품목에 대해 산업경쟁력 조사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크고 무역구제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는 미국, EU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의 실무자를 초청한 국제세미나와 대학원생 대상 연구논문 공모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전문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무역구제 조사제도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홍보물 발간,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무역위 홈페이지에 국제세미나 동영상 게재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전문잡지인 ‘무역구제(Trade Remedy Review)’를 4회 발간하여 무역구제 전문가의

정책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국제협력부문에서는 중국, EU와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멕시코, 브라질, 호주, 뉴질랜드와 양자간 신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WTO DDA 반덤핑 협상, WTO 반덤핑위원회 등에서 우리측 입장을 제시하고 국제규범 형성 논의과정에 참가하였다.

제 2 절 무역구제 근거법률 개정 및 지침 정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특정회원국 및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물품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 개정('03.12.22 국회의결)하였다.

동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종전에는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 등의 거래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거래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1조제1항), 둘째,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회원국의 물품 또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행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법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셋째, 무역위원회의 증거수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시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법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역구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에 맞추어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각종 무역구제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예규 등 하부 규정을 정비하여 법 운영체계의 일원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마련

[무역위원회고시 제2003-1호, 2003.3.13시행]

종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 및 세부적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마련

[무역위원회고시 제2003-2호, 2003.3.12 시행]

종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수입증가로인한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중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경쟁력영향조사 부분을 분리하여 중간재검토 및 연장재검토를 포함한 세이프가드의 신청·조사·판정 절차 및 검토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WTO 협정상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3.「세이프가드조치에 필요한 국내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제정

[무역위원회예규 제2003-1호, 2003.3.12 시행]

WTO 세이프가드협정 및 WTO DSB(분쟁해결기구) 판정결과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업피해 조사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구제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를 제공하고, 조사절차의 공정성·투명성과 조사기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무역위원회 판정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제정하였다.

4.『보조금률조사 실무지침』개정

[무역위원회예규 제2003-3호, 2004. 1. 1 시행]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보조금조사 실무지침」(무역위원회예규 제1999-2호)이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내용 및 구성이 복잡하여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단기간에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조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조사실무지침을 개정하게 되었다. 보조금률조사 실무지침 개정팀을 구성하여 보조금관련 연구용역결과인 「주요 보조금 유형별 혜택 및 판매가치산정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지침에 반영하였으며, 다양한 보조금률 계산사례를 수록하여 보조금률 산정방법을 대폭 강화하였다. 또한, 관련 법규·실무에 사용되는 표준서식, 문서양식, 질의서 작성예를 수록하여 향후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시 조사관의 실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제 3 절 산업피해구제 조사

1. 조사신청

2003년 중 신청된 산업피해 제소는 반덤핑 제소가 15건으로 모두 원심이었다.

〈표 III-8-1〉 연도별 반덤핑 제소 추이

(단위 : 건)

연도 /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계
국가별	49	18	8	8	17	6	18	15	139
품목별	26	11	4	6	8	6	12	7	80

〈표 III-8-2〉 연도별 세이프가드 제소 추이

(단위 : 건)

연도 / 구분	87-96	97	98	99	00	01	02	03	계
품목별	29	-	1	1	-	1	1	-	33

2. 조사수행 및 조치

2003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반덤핑제소 15건과 신규로 신청된 15건 등 총 30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수행되어 전년도 이월된 15건은 모두 2003년도에 종결처리(덤핑방지관세부과 10건, 부정판정 4건, 신청철회로 인한 조사종결 1건) 되었다.

2003년에 새로이 제소가 접수된 15건(벨기에 · 스페인 및 이태리산 파티클보드, 중국산 규산나트륨, 일본 ·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스틸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일본산 6축수직다관절형 산업용로보트, 일본 · 미국

산 리튬1차전지, 미국 · 인도 · 중국 · 캐나다산 염화콜린)은 2003년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며, 2004년에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표 III-8-3〉 2003년도 조사 및 조치 내역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2. 6.29	2-에틸헥실알코올 (미국, 독일 폴란드, 프랑스)	02. 8.22 제177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1.22 제184차 무역위, 부정판정
02.5.2	일회용포켓형라이터 (중국)	02. 6.20 제174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4. 2 공청회 개최 03. 4.23 최종긍정판정
02.6.27	수산화알루미늄 (일본)	02.8.22 제177차 무역위, 조사개시 결정 02.12.26 제183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2.19 공청회개최 03. 6.11 제186차 무역위,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수락
02. 8.27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베트남)	02.10.10 제179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4. 2 공청회개최 03. 2.19 제185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4. 2 공청회개최 03. 4.23 제186차 무역위, 조사종결(신청철회)
02. 8.27	일회용포켓형라이터 (인도네시아)	02.10.10 제179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4 .2 공청회개최 03. 2.19 제185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4. 2 공청회개최 03. 7.23 제187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2. 9.30	정보용지 및 백상지 (인도네시아, 중국)	02.11.14 제18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4.23 제187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8.27 공청회개최 03. 9.24 제193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2.10.8	페로실리코망간 (중국)	02.11.14 제18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8. 6 공청회개최 03.10.11 제19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2.10.8	폴리비닐알코올 (일본)	02.11.14 제18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6.25 공청회 03.10.11 제19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제소일	대상품목	조사 및 조치
02.10.12	알칼리망간건전지 (중국, 일본, 싱가폴)	02.12. 5 제182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9.24 공청회개최 03.10.11 제194차 무역위, 최종긍정판정
03 .4.30	파티클보드 (벨기에, 스페인, 이태리)	03. 6.11 제188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4. 1.14 제198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5.12	스테인레스스틸바 (일본, 인도, 스페인)	03. 6.25 제189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12. 3 제196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5.14	규산나트륨 (중국)	03. 6.25 제189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11.19 제195차 무역위, 기각판정
03. 6. 9	차아황산소다 (중국)	03. 7.23 제191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12.15 제197차 무역위, 예비긍정판정
03. 7 .7	6축수직다관절형산업용로보트(일본)	03. 9. 3. 제192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 7.16	리튬1차전지 (일본,미국)	03. 9. 3 제192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03.10.31	염화콜린(미국, 인도 중국, 캐나다)	03.12. 3 제196차 무역위, 조사개시결정

제 4 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1. 조사현황

2003년중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수는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3건과 2003년도에 신규로 조사 신청된 4건을 합쳐 7건으로 모두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표 III-8-4〉 연도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건수

(단위 : 건)

유형 \ 연도	87-96	97	98	99	00	01	02	03	계
지재권 침 해	107	-	-	3	3	2	4	4	123
원산지 위 반	41	-	1	3	3	6	4	-	58
질 서 저 해	41	2	8	4	3	5	1	-	64
계	189	2	9	10	9	13	9	4	245

〈표 III-8-5〉 2003년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수

(단위 : 건)

구 분	전년도 이월	신규 신청	계
지적재산권 침해	3	4	7
원산지표시 위반	-	-	-
기타 수출입질서저해	-	-	-
계	3	4	7

2. 처리내역

2003년중 처리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과징금과 시정조치 병과 1건, 시정조치 1건, 기타 무혐의 등으로 인한 조사종결 등이 3건이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03년말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표 III-8-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처리현황

(단위 : 건)

구 분	제재조치 건의	제재조치		관계기관 이 첩	기 타 (무혐의등)	조사중	계
		과징금과 시정조치병과	시정조치				
건 수	-	1	1	-	3	2	7

제5절 위원회 및 공청회 개최

2003년에는 무역위원회 회의를 총 14회 개최하여, 보고안건 14건 및 의결안건 30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산화알루미늄 등 6개품목의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총 6회 개최되었다.

〈표 III-8-7〉 무역위원회 회의개최 및 처리안건 현황

구 분		위 원 회	공 청 회
개최횟수		14회	6회
처리안건	보 고	14건	-
	의 결	30건	

제6절 조사·연구

1. 연구용역

가. DDA 반덤핑협정개정과정에서의 미국, EU 및 중국의 협상 입장 분석 연구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된 반덤핑협정은 여전히 그 규정이 모호하거나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조사당국의 자의적인 반덤핑조치의 집행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빈번한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미국의 반대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들의 찬성으로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포함한 규범분야가 협상의제에 포함되었다. 반덤핑과 관련하여 도하각료선언은 반덤핑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을 유지하고,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고려하

면서 반덤핑협정의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실체조항의 개정보다는 절차적 조항의 개선작업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절차와 관련한 제안으로 증거에 관한 조사당국의 관련정보의 입수허용, 조사과정의 기록의 유지, 회원국의 반덤핑관련 법규의 통보, 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현장조사 보고서의 공개, 사법적 심사의 허용, 조사비용의 축소 등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가장 빈번하게 반덤핑조치를 부과 받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입국보다는 수출국의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중국의 제안 내용은 기타 개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아니 하였으나, 다른 회원국들과 다른 유일한 제안내용은 비시장경제조항의 폐지이다. 이는 중국의 특별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제안으로서 이 조항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DDA 반덤핑협상 Friends그룹 제안이슈에 대한 분석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 결과 DDA 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하였으며, 그 결과 반덤핑협정의 개정도 협상의 일부에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프렌즈그룹은 반덤핑협정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본 연구서에서는 WTO DDA 반덤핑협상과 관련된 프렌즈그룹의 제안사항을 분석함으로써 반덤핑협정에 임하는 협상단이 아국의 입장을 정립하데 기여하였다.

다. 주요 보조금 유형별 혜택 및 판매가치산정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 용에 관한 연구

2002년 하이닉스반도체 상계관세 피제소 등 보조금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무역위원회에서도 상계관세부과를 위한 조사에 대한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 관련 제소에 대한 이해 및 대응절차 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정부와 업계의 보조금 조사에 대한 이해증진, 반보조금 제소 위험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도와주고 보조금

률 산정기법의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과거 수년간 미국과 EU로부터의 상계관세 제소에 대하여 우리 정부 및 국내 피제소자들의 자문을 수행한바 있는 실무경험이 많은 회계법인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조금 조사에 관한 실무지침 개정에 반영하였다.

라. 산업경쟁력조사

무역위원회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큰 개별산업 또는 특정품목에 대해 미시적 조사·분석을 통해 산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업·무역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경쟁력조사사업을 시행하였다. 2002년 '자동차변속기산업 경쟁력조사'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문연구기관이 각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과 우리 업계의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2003년에는 '안경테산업 경쟁력조사' 등 5개 품목 과제와 '미국, EU 및 캐나다의 반덤핑조사 사례분석' 등 10개 무역제도 과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2. 무역구제에 관한 국제 세미나 개최

2003. 5월에 개최된 국제세미나는 최근 국제적으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가 종전의 선진국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다수 국가에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구제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크고, 무역구제를 적극 운용하고 있는 미국, EU, 인도, 중국 무역구제기관 실무 책임자가 발표자로 참가하여 각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관한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국내기업 및 단체, 학계,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주한 핀란드 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 국내 주재 외국기업인 등 외국인 참가자만 30여명에 이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으며 무역구제제도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 무역구제제도 대학(원)생 세미나 개최

전국의 대학(원)생들에게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연구와 발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분야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원)생 세미나를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003년 11월 28일 무역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19개팀이 응모하여 그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6개팀이 참가하였다. 고려대 대학원팀이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무역구제에 관한 법률의 비교분석"을, 건국대 대학원팀이 “RTA하에서의 세이프가드제도의 운용방안에 관한 고찰"을, 중앙대 대학원팀이 “한국 반덤핑 제소의 단기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4.「반덤핑·보조금 연구반」등의 연구모임 활성화

무역조사실내 자체 연구모임인 「반덤핑·보조금 연구반」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가 초청 토론회와 직원 연구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 7 절 제 도 홍 보

1. 무역구제제도 홍보

가. 다각적 홍보·교육 활동

2003년도는 무역구제제도의 이용과 무역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다각적인 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한 한해였다. 무역구제 활용도 제고 및 업계에 대한 무역구제서비스 강화를 위해 홍보물 발간은 물론, 정보력이 취약하여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반덤핑제도 이용 간담회와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무역구제 제소가 최고 경영층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업의 CEO 대상 교육활동도 전개하여 호서대 최고경영자과정, 한국관세사회, 국가정보원교육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연수원등에 출강하여 잠재적 수요층에 대해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촉진토록 하였다.

나. 무역구제 지식정보 네트워크 형성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슈, 국제동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1. 1월 '무역구제(Trade Remedy Review)'를 창간하여 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무역구제'지는 무역구제 논단, 무역구제 사례연구, WTO패널분석 등의 논문을 게재하여 관련 정책담당자, 교수, 법률 및 회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정책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2. 무역구제 수요에 대한 지원

무역위원회는 자금력과 정보력이 취약하여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상담 등 지원활동을 수행하여 무역구제 제소 요건과 절차, 신청서 작성 방식 등을 설명하고, 무역구제 운영 및 사례에 관한 자료집을 배포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의 제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피제소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그간 무역구제제도를 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반덤핑으로 제소당한 기업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대응요령과 답변서 작성요령 등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여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직접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온라인상으로 상담 및 피해 제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제소 예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소 경험사례도 게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각 분야별로 조사 및 판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과 향후 일정을 게재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제8절 국 제 협 력

무역위원회는 지금까지 중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구제제도 관련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무역분쟁의 사전예방과 조사업무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중국과 1999년도에 양국 관련기관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매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여 왔으며, 2002년 한국과 EU 집행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2003년 11월에는 한EU간 제1차 무역구제기관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0월, 11월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 브라질 및 멕시코와 각각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무역구제분야 협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무역구제제도 운영과 보다 원활한 산업피해예방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제4차 한·중 무역구제 정례협의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3년 12월 중국 상무부와 제4차 한·중무역구제기관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8월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년 10월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었으나 2003년 3월 이원화되어 있던 반덤핑조사(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산업피해조사(국가경제무역위원회) 업무와 조직이 신설된 상무부로 통합되어 종전 두 기관과 별도로 실시하던 정례협의회를 단일창구인 상무부와 하게 된 것이다.

북경에서 개최된 이번 협의회에서는 반덤핑 등 양국 무역구제제도와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동향, 조사관 교류 등 다양한 의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무역구제제도운영과 관련, 양국은 WTO규범에 의거한 공정한 조사와 판정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특히, 우리측은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감안, 반덤핑조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양국정부와 관련업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전문제해결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무역구제제도 관련 국제동향에 대해 양국은 미국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철회조치를 환영하며 철강분야 자유무역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EU의 회원국 확대에 따라 신규 회원국에 EU 수입규제조치를 확대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향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하였다.

2. 제1차 한·EU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 개최

무역위원회는 2003년 11월 서울에서 EU 집행위와 제1차 양자간 무역구제기관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김상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과 EU 측에서는 EU 집행위원회 Fritz-Harald Wenig 무역구제국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하여 각각의 무역구제기관 조직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EU 확대에 따른 무역구제조치의 효

과, 향후 양자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다. EU는 대 EU 수입품에 대해 기존 EU 회원국(15개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무역구제조치가 2004년에 가입하는 신규 10개 회원국에도 자동 적용하게 됨을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양국 무역구제기관간 본격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2004년 중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 무역위원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전문 세미나를 EU가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한국은 2004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 무역구제 국제세미나에 EU전문가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3. WTO 반덤핑위원회 및 WTO/DDA 규범협상그룹회의 참가

WTO 반덤핑위원회 및 WTO/DDA 규범협상그룹회의(총6회)에 참가하여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 각국의 덤핑방지제도 운영사례 등을 파악하고, WTO 반덤핑협정 등 국제규범의 개정과정에서 아국협상단에 전문적 지식 제공등의 지원을 하였다.